

의안번호	2201717
의 퇴 인	김상욱의원
회 답 일	2024.10.18.
추 계 번호	24D1944

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공상경찰공무원 전체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억 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56억 300만원(연평균 31억 2,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추가재정소요	2,906	3,010	3,117	3,227	3,342	15,603	3,121

자료: 경찰청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 (공상경찰공무원 지원)	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2항)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기준,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 (공상경찰공무원 지원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은 “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”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으로 정의하고,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은 “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” 개념을 삭제하고, “공상경찰공무원”을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을 경찰공무원으로 정의하고, 공상경찰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위험직무가 아니더라도 공무상 재해를 입을 경찰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개정안은 위로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기준, 그 지급액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, 지급대상은 전체 공상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최근 경찰공무원의 연평균 증가율과 전체 경찰공무원 중 공상경찰공무원 및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
 - 지급단가는 2023년 평균 실지급단가¹⁾에 최근 5년간 시행령상 지급단가 인상률을 적용
 - 지급기간은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2025년부터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 요양기간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공무상 요양기간 평균값을 적용
-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,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~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지급단가는 요양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실지급단가는 당해 연도 공상경찰공무원의 요양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공상경찰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 지급(안 제12조)

- 현행법은 “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”에게 공무상 요양기간²⁾ 동안 6개월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1일 2만 3,920원을, 6개월 초과는 1일 5,980원³⁾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

[표 2] 특별위로금 지급 단가: 2019~2024년

(단위: 명)

	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
지급단가 (원/일)	6개월 이하	22,967	23,357	23,183	23,357	23,573	23,920	1.0%
	6개월 초과	5,742	5,839	5,796	5,839	5,893	5,980	1.0%

주: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적용됨

자료: 경찰청

- 2019~2023년까지 “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”에게 지급된 특별위로금은 평균 265명에게 1일 1만 8,757원씩 48.8일간 지급하여 평균 지급총액은 2억 4,256만원 지급되었음

[표 3] 특별위로금 지급 현황: 2019~2023년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합계	평균
지급인원(명)	281	225	203	265	352	1,326	265
평균 지급금액(원/일)	21,590	18,690	17,631	19,991	19,599	-	
평균 지급일(일)	35.5	57.9	63.5	45.5	41.4	243.8	48.8
지급총액(천원)	215,371	243,483	227,271	241,045	285,614	1,212,784	242,557

자료: 경찰청

- (추가 지급대상) 최근 5년간 전체 경찰공무원 수 대비 공상경찰공무원

2) 공무상 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,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2025년부터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 요양기간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임

3) 지급단가는 매년 시행령에 의해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적용됨

수 비율 평균을 적용하여, 추계기간의 공상경찰공무원수를 추정

-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수 연평균 증가율 2.5%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경찰공무원 수를 추정

[표 4] 경찰공무원 수 추이: 2018~2022년

(단위: 명, %)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 증가율
전체 경찰공무원 수	118,651	122,913	126,227	128,985	131,004	2.5

자료: 경찰청

- 전체 경찰공무원 대비 공상경찰공무원 비율 최근 5년간 평균과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비율 최근 5년간 평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공상경찰공무원 수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수를 추정하여,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대상 수를 추정

[표 5] 공상경찰공무원 비율: 2019~2022년

(단위: 명, %)

구 분		2019	2020	2021	2022	2023	평균
전체 경찰공무원 수		122,913	126,227	128,985	131,004	—	—
공상 경찰공무원	인원	2,127	1,564	1,163	1,547	1,547	—
	전체 경찰공무원 대비 비율	1.73	1.24	0.90	1.18	—	1.26
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	인원	281	225	203	265	352	
	전체 경찰공무원 대비 비율	0.23	0.18	0.16	0.20	—	0.19

자료: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특별위로금 추가지급대상 공상경찰공무원 수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명, %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전체 경찰공무원 수	144,643	148,269	151,986	155,796	159,702
공상경찰공무원 수(A)	1,827	1,873	1,920	1,968	2,017
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(B)	277	284	291	299	306
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대상(A-B)	1,550	1,589	1,628	1,669	1,711

주: 소숫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지급단가) 지급단가는 2023년 실지급단가 19,599원/일에 최근 5년간 시행령에 따른 지급단가 인상률 1.0%를 적용

[표 7] 특별위로금 지급단가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명, %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지급단가	144,643	148,269	151,986	155,796	159,702

자료: 경찰청

- (지급기간)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2025.1.1.일부터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 요양기간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고려하여, 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공무상 요양기간 평균일수 92.8일 적용

[표 8] 공상공무원 1인당 평균 공무상요양기간 : 2019~2023년

(단위: 명, %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평균
전체 경찰공무원 수	74.5	117.2	120.3	80	72.1	92.8

자료: 경찰청

나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공상경찰공무원 전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억 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56억 300만원(연평균 31억 2,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9]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추가 지급대상(명)	1,550	1,589	1,628	1,669	1,711	8,147	1,629
지급단가(원)	20,206	20,412	20,621	20,831	21,044	—	—
지급기간(일)	92.8	92.8	92.8	92.8	92.8	—	—
추가재정소요(백만원)	2,906	3,010	3,117	3,227	3,342	15,603	3,121

자료: 경찰청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전체 공상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으나, 개정안은 위로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기준, 그 지급액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지급대상 및 기준, 지급액 등 시행령 규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